

전국규모연맹체 규정

제정	2014. 1. 17.
개정	2016. 11. 07.
개정	2019. 9. 22.

제4장 임 원

제10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회장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같다.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개정 2020.9.22.>

~~5.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만 당선된다.<삭제 2020.9.22.>~~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전국규모 연맹체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

이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체육회, 협회, 다른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8. 체육회, 협회, 다른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9. 체육회, 협회, 다른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사익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사람

10. 체육회, 협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

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1. 국회의원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전국규모연맹체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전국규모연맹체 또는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전국규모연맹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전국규모연맹체는 해당자로부터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전국규모연맹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익이 제기되면 협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⑥ 전국규모연맹체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